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3. 7.

비엔케이투자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연차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하였으며,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7일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2
2. 이사회	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3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68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94
6. 감사위원회	101
7. 리스크관리위원회	111
8. 내부통제위원회	121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25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25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26
2. 보수체계	136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및 금융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후보 확정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해임 권한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

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4년말 현재 총 이사 6명 중 사외이사 5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4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경영분야 2명, 재무·회계분야 1명, 행정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bnkf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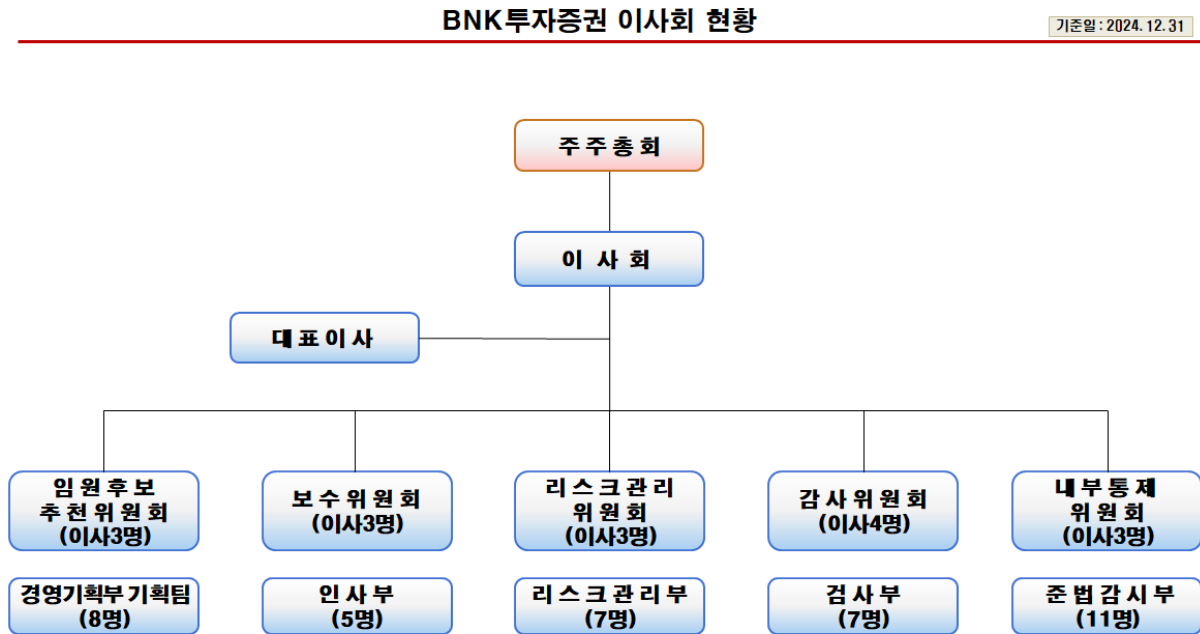
(협회 사이트 주소 : dis.kofia.or.kr)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

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후보 확정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6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총 이사 수의 과반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말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사회내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내실화, 견제/감독 기능의 실질화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 구성원수)	의장 (이름/사내 · 사외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의사 결정기구	5/6 ¹⁾	박홍신 (사외이사)	정관 제2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조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3/3	조점호 (사외이사)	정관 제27조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3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회사 감사 및 내부통제 평가	3/3 ¹⁾	노희진 (사외이사)	정관 제27조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감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보수체계 수립	3/3	이봉철 (사외이사)	정관 제27조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보수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리스크 총괄 정책 수립	3/3	이장우 (사외이사)	정관 제27조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내부통제 위원회	내부통제 정책 및 전략 수립	3/3 ¹⁾	박홍신 (사외이사)	정관 제27조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2 내부통제위원회규정

1) 김필상 사내이사 2025.01.01.자로 신규선임 되어,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 시 각 5/7, 3/4, 3/4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규정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5.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6.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7.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8. 내부통제위원회규정
- 첨부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 첨부10. 사외이사운영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초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 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7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영전략 및 계획은 2024년 12월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진 및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 12월 개최된 13차 이사회에서 2025년도 경영전략 및 목표를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경영방침은 “경영정상화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보”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전략 과제로는 핵심사업(IB) 수익성 증대를 통한 성장 추진, 수익기반 확장적 다변화로 안정성 확보, 중형사로의 관리역량 확립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토록하여 경영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정관 제27조의 3, 이사회규정 제7조)

이에 따라 2024년 3월 개최된 제3차 이사회와 12월 개최된 제14차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3차 이사회에서 다루었던 정관 변경(안) 부의 사유는 당사의 지배구조법 적용(자산 5조 이상)에 따른 관련 내규 제개정을 위함으로,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제도 변경 및 이사회, 위원회 업무 내용 규정 등을 변경하였으며, 2024년 3

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정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4차 이사회에서 다루었던 정관 변경(안) 부의 사유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및 상임감사위원제도 도입 반영을 위함으로,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12월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정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 정관 제27의3, 이사회규정 제7조).

이 경우 내년도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2025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24년 12월 개최된 2024년도 제13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2024년도 결산(배당 포함)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3월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29기(2024년) 결산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목표	실적
당기순이익	700	123
총자산	60,000	81,287
자기자본	12,358	11,740
ROA	1.27	0.16
ROE	5.79	1.04
총자산경비율	2.14	2.14
CIR	50.79	50.79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 이사회규정 제7조) 2024년 중 당사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제15조, 이사회규정 제7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을 의결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제1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 점검 결과’, ‘금융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결과’, ‘자금세탁방지제도 감사결과’,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제2차 이사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제3차 이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고 매 분기마다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제15차 이사회에서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에 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목표, 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감시 역할을 이사회내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자세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본문 7. 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이사회규정 제7조)

지배구조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 등의 추천을 위해 이사회내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등의 임원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근거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과 경영승계의 절차, 후보자 발굴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 또한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 실시여부 및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의 이사회는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 등((주)BNK금융지주 및 그 계열사 등 포함)과 회사 간의 거래시 이사회에서 사전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이사등과의 거래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23년도 제16차 이사회에서 2024년도 회사와 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의 동종의 반복거래에 대한 포괄승인을 결의하였고, 분기마다 회사와 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의 포괄거래에 대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와 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의 주요한 개별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 등 간의 거래가 내규 ‘내부거래관리지침’에 의거 이해상충 우려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매 분기마다 회사와 그룹사간 포괄거래 승인내역 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써 이해상충행위를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3조에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이사 총원 수는 6명으로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총원 수를 6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이사회의 구성원 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되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정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장기 재임에 따른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써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

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 여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4년 3월에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박홍신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박홍신 이사는 2023년 3월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행정 정책 전문

가로서 탁월한 자문 역량 및 이사회 참여의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2024년 3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임기 1년) 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박흥신(現)

- 직위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6. ~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의장	위원	위원	-	-	위원장

- 주요 경력
 - 한화생명보험 상임 고문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 감사
 - 대통령 비서실 정책홍보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나) 신명호(現)

- 직위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4.01.01 ~ 2025.12.31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이사	-	-	-	-	-
----	---	---	---	---	---

- 주요 경력

- 현대차증권 고문
- 유안타증권 고문
- 유안타증권 전무 IB사업부문대표
- 하나금융투자 전무 IB부문장
- DB금융투자 상무 기업금융본부장

다) 이장우(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6. ~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이사	-	-	위원장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 부산대학교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現)
-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발전위원장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 한국금융공학회장

라) 조점호(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6. ~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이사	위원장	-	위원	-	위원

- 주요 경력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상임이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본부장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지사장

마) 노희진(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4.03.21. ~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	위원장	-

- 주요 경력
 - SK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 코스콤 상임감사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 대우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 엘지생활건강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바) 이봉철(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4.03.21. ~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이사	-	위원장	위원	위원	-

- 주요 경력
- 호텔롯데 고문
- 호텔롯데 각자대표이사 겸임
-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사장
-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 롯데지주(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겸)

사) 이장규(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4. ~ 2024.03.21.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의장	-	-	위원	-	-

- 주요 경력
- 에어로케이홀딩스 대표이사
- (주)LG 사외이사

- 서강대 대외부총장
- 삼정KPMG 부회장
- 하이트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하이트맥주 대표이사 겸직)
- 중앙일보 편집국장

아) 이재술(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4. ~ 2024.03.21.
- 담당 업무(2024년말 기준)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이사	위원	-	-	-	-

- 주요 경력

- 보령제약 감사
- 롯데쇼핑 사외이사
-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3) 요약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	---------------	----	----	-----------	-----------	----------	-----------

박흥신	사외	이사회회장 내통위원장	16.07 한화생명보험 상임 고문 11.09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 감사 10.08 대통령 비서실 정책홍보비서관 08.02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23.03.16	2025.03 정기주총일까지	21개월	임추위 보수위 내통위
신명호	상임	대표이사	22.04 현대차증권 고문 21.01 유안타증권 고문 18.01 유안타증권 전무·B사업부대표 13.03 하나금융투자 전무·B부부장	24.01.01	2025. 12.31	12개월	-
이장우	사외	리스크관리 위원장	22.06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발전위원장 20.07 금융위원회 금융중상지 추진위원 18.06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 18.12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위원 15.01 한국금융공학회장 11.01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23.03.16	2025.03 정기주총일까지	21개월	리스크위 감사위 내통위
조점호	사외	임원후보 추천위원장	20.04 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장 18.02 동사 기획조정실장 16.07 동사 리스크관리부장 16.01 동사 유통화증권부장 14.01 동사 경남지사장	23.03.16	2025.03 정기주총일까지	21개월	임추위 리스크위 내통위
노희진	사외	감사위원장	17.03 SK증권 사외이사 14.01 코스콤 상임감사 12.01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09.03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06.03 대우증권 사외이사 05.03 LG생활건강 사외이사	24.03.21	2026.03 정기주총일까지	9개월	임추위 보수위 감사위
이봉철	사외	보수위원장	21.01 호텔롯데 고문 20.01 호텔롯데 각자대표이사 겸임 20.01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20.01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17.01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 장 15.03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	24.03.21	2026.03 정기주총일까지	9개월	보수위 리스크위 감사위

4) 2024년 기간 내 퇴임 이사 현황(2024.1.1.~2024.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이장규	사외	이사회회장	19.03 에프에프비앤지 대표이사 15.03 (주)LG사외이사 14.06 사강대리부총장 12.10 삼정PMG 부회장 10.03 하트윅스 대표이사	22.03.24	2024.03.21	24개월	리스크위

			0501 중앙일보관감주장				
이재술	사외	-	1904 보령해역감사 1704 롯데렌탈사이사 1703 달호트코아회장 1404 달호트코아회감인대표이사 1303 금융위원회공익사문위원 0909 달호트코아대표이사	22.03.24	2024.03.21	24개월	임추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15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2.0%였으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사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들의 요청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 반영함으로써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1) 제2024년도 제1차 이사회 : 2024.01.31.(수) (10:30~11:30)

[안건 통지일 : 2024.01.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이장규	이재술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전략적 채권투자 복 운영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건 2023년 4분기 당 사와 계열사간 거래(포괄) 승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3호안건 2023년 4분기 자 금차입 현황	특이사항 없음						-
라. 4호안건 계열사간 거래 (개별) 결과 (BNK SUM 여자 프로농구단 광고 협찬 계약)	특이사항 없음						-
마. 5호안건 2023년 4분기 고 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	특이사항 없음						-
바. 6호안건 2023년 자금세탁 방지 업무	특이사항 없음						-
사. 7호안건 2023년 하반기 내부 통제 체제·	특이사항 없음						-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아. 8호안건 2023년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점검		특이사항 없음					-
자. 9호안건 2023년 금융소비 자 보호협의회 운영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차. 10호안건 고난도금융투자 상품 제조 및 판 매 운영 체계 점 검		특이사항 없음					-
카. 11호안건 2023년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결 과		특이사항 없음					-
타. 12호안건 2023년 자금세탁 방지제도 감사결 과		특이사항 없음					-
파. 13호안건 2023년 감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계열사간 거래 (개별)승인 (BNK금융타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층 전대차 계약 체결)							
나. 2호안전 제28기(2023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2024년도 제2차 이사회 : 2024.02.28.(수) (10:30~11:30)

[안전 통지일 : 2024.02.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이장규	이재술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1호안전 2023년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전 2023년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3호안전 2024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전							

가. 1호안건 2023년도 경영 진 단기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1년도 경영 진 장기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2024년도 제3차 이사회 : 2024.03.21.(목) (09:40)

[안건 통지일 : 2024.0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이장규	이재술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개인신용정보 관 리 및 보호 실태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인빅터스-BNK ESG 제1호 사모 투자합자회사 설 립 및 투자(출자) 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24년도 자금차 입 한도 변경 승 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정관 변경(안)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지배구조 내부규 범 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이사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7호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 회 규정 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8호안건 보수위원회규정 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9호안건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10호안건 감사위원회 설치 에 따른 상근감사 제도 폐지(안)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1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 이 되는 사외이사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후보자 확정							
카. 12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13호안건 제28기 정기주주 총회 소집 및 회 의의 목적사항 결 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제2024년도 제4차 이사회 : 2024.03.21.(목) (11:10~11:20)

[안건 통지일 : 2024.0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이사회 의장 선 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임원후보추천위 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

(5) 제2024년도 제5차 이사회 : 2024.04.24.(수) (11:00~11:40)

[안건 통지일 : 2024.04.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흥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1분기 고 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현황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건 2024년 1분기 고 난도상품승인위원 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3호안건 2024년 1분기 가 결산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라. 4호안건 2024년 1분기 자 금차입현황	특이사항 없음						-
마. 5호안건 2024년 1분기 당사와 계열사간	특이사항 없음						-

포괄거래 승인결과							
바. 6호안건 2024년 제2차 임 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사. 7호안건 2024년 제2차 리 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아. 8호안건 2024년 제1차 보 수위원회 결의사 항				특이사항 없음			-
자. 9호안건 2024년 제1차 및 제2차 감사위원 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호안건 내부통제기준 개 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6) 제2024년도 제6차 이사회 : 2024.05.29.(수) (11:00~11:40)

[안건 통지일 : 2024.05.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3차 리 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건 2024년 제2차 보 수위원회 결의사 항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계열사간 거래(개 별) (BNK금융타 워 10층 추가 임 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지배구조 관련 내 규 등 제·개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3호안건 내부통제기준 개 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4호안건 고난도금융투자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품 판매 승인							
---------	--	--	--	--	--	--	--

(7) 제2024년도 제7차 이사회 : 2024.06.26.(수) (10:30~11:00)

[안건 통지일 : 2024.06.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3차 보수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24년 과생결합사채(DLB) 공모 발행예정금액 및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4년도 자금차입한도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제2024년도 제8차 이사회 : 2024.07.23.(화) (15:00~16:00)

[안건 통지일 : 2024.07.1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체제·운 영 실태 점검결 과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건 2024년 2분기 고 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	특이사항 없음						-
다. 3호안건 개인신용정보 관 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라. 4호안건 2024년 2분기 고 난도상품승인위 원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마. 5호안건 2024년 2분기 가 결산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바. 6호안건 2024년도 상반기 사업(전략) 계획	특이사항 없음						-

진행상황 점검 보고							
사. 7호안건 2024년 2분기 자 금차입 현황	특이사항 없음						-
아. 8호안건 2024년 2분기 당 사와 계열사간 거래(포괄) 승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그룹계열사 보안 점검 및 전산해 킹 대비 점검 (계열사간 거래 (포괄) 승인 대 상 추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9) 제2024년도 제9차 이사회 : 2024.08.28.(수)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4.08.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흥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특이사항 없음						-

2024년 제5차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							
나. 2호안건 2024년 제4차 보수위원회 결의 사항	특이사항 없음						-
다. 3호안건 지주회사의 “자 회사 CEO 경영 승계계획” 개선 내용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24년 자금 차 입 한도 변경 승 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0) 제2024년도 제10차 이사회 : 2024.09.24.(화) (14:20~15:00)

[안건 통지일 : 2024.09.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5차	특이사항 없음						-

보수위원회 결의 사항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채무조정규정 제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11) 제2024년도 제11차 이사회 : 2024.10.23.(수) (10:30~11:30)

[안건 통지일 : 2024.10.1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건 2024년 3분기 가결산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3호안건 2024년 3분기 자금차입 현황	특이사항 없음						-
라. 4호안건 2024년 3분기 당사와 계열사간	특이사항 없음						-

거래(포괄) 승인 결과							
마. 5호안건 2024년 3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당사와 (주)부산은행간 차액대행계약 연장 (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당사와 (주)부산은행간 신용공여 기한연장 (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BNK 씬 여자프로농구단 광고협찬 계약(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2) 제2024년도 제12차 이사회 : 2024.11.27.(수)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4.1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6차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과생결합증권(ELS)/과생결합사채(ELB, DLB) 공모 발행한도 및 일괄 신고서 제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3) 제2024년도 제13차 이사회 : 2024.12.17.(화) (10:40~11:40)

[안건 통지일 : 2024.12.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6차 보수위원회 결의 사항	특이사항 없음						-
나. 2호안건 책무구조도 도입 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25년(제30기) 경영계획 수립 (안)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5년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내부회계관리규 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2025년 전자단기 사채 발행 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14) 제2024년도 제14차 이사회 : 2024.12.27.(금) (09:40~10:10)

[안건 통지일 : 2024.12.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홍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4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정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자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3호안건 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 집 및 회의의 목 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4호안건 이사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마. 5호안건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바. 6호안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15) 제2024년도 제15차 이사회 : 2024.12.27.(금) (10:30~11:00)

[안건 통지일 : 2024.12.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신명호	박흥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1. 이사 성명	신명호	박흥신	이장우	조점호	노희진	이봉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호안건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3호안건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4호안건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당사의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이사회 구성의 경우 “전략제시 능력, 위기관리 대응 능력, 경영통제 및 감독의 효율성, 이사회 권한 및 수행기능의 적정성, 이사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등의 정성 평가와 “이사회 참석률”의 정량평가가 포함되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 발전 기여도” 등의 정성평가와 “위원회 참석률”의 정량평가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에 필요한 세부 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당사는 이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외이사의 경우 매년 1~2월경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종류는 “자기평가, 상

호평가(본인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 직원평가”의 정성평가와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평가,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시간”의 정량평가를 실시하며,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으로 “역량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연임 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4년 4차 이사회에서 박흥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임기: 2024.03.21. ~ 2025년 정기주총일까지)함으로써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원 3명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 임원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근거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과 경영승계의 절차, 후보자 발굴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 또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적극적 자격요건의 세부 내용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룹 및 회사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또한,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사외이사로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자

2024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4년말 기준으로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1.01 ~ 2024.03.2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점호	사외	위원장	2023.04.26	2024.03.21
이재술	사외	위원	2023.04.26	2024.03.21
박홍신	사외	위원	2023.04.26	2024.03.21

<2024.03.21 ~ 2024.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점호	사외	위원장	2024.03.21	2025.3월 정기주총
박홍신	사외	위원	2024.03.21	2025.3월 정기주총
노희진	사외	위원	2024.03.21	2025.3월 정기주총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대상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원부서에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군이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후보로 추천합니다.

회사는 대표이사 등 임원 후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 후보 확정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사내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수행 평가는 보수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로 평가 확정되고 있으며, 연간 경영활동에 따른 실적이나 장기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회 매년 1~2월 사외이사의 이사회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임 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결의 안건 4건이며, 결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2024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03.21. (목) 09:30~09:40>

[안건 통지일 : 2024.0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점호	박홍신	이재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찬성	찬성	-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나. 2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찬성	찬성	-	가결

제2024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03.21. (목) 11:20~11:30>

[안건 통지일 : 2024.0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점호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024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12.27. (금) 09:30~09:40>

[안건 통지일 : 2024.12.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점호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 발전 기여도, 위원회 참석률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방법은 개별평가위원(임추위 위원) 및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에게 평가표를 제공한 후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하며(위원회 구성원들의 서면평가를 통해 수행),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 받은 후 위원회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2023년 12월 28일 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명호 대표이사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2024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김필상

(2) 출생연도 : 1965년

(3) 출신학교 : 경상대 무역학과 학사, 경상대 경제대학원 석사,
경희대 경제학과 박사 중퇴

(4) 경력

2023.01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자문역

2020.03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부국장

2018.0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2016.02 금융감독원 보험준법검사국

2014.05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나) 후보 제안자

김필상 후보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김필상 후보자는 보험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민원총괄국 자문역, 신속민원처리센터 부국장, 분쟁조정국, 보험준법감사국, 상호금융감사국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 및 감사부문의 높은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그 간의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독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김필상 후보자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근거 2024.12.27.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후보자는 당사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내규 등에서 정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검증하였고 후보자는 동 항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당사와 이해상충우려가 있는 거래관계가 없고, 또한 금융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 및윤리성을 가지고 당사의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필상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4.12.27. 제3차 임원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데, 김필상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노희진)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노희진

(2) 출생연도 : 1954년

(3) 출신학교 : 성균관대 무역학과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Georgia 경영학 박사

(4) 경력

2017.03 SK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2014.01 코스콤 상임감사

2012.01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2009.03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2006.03 대우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2005.03 엘지생활건강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5) 사외이사 경력

-재임기간 : 2024.03.21. ~ 현재

-재임기간 중 출석률(2024.03.21. ~ 2024.12.31.)

: 이사회 총 12회 중 12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회 중 2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나) 후보 제안자

노희진 후보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노희진 후보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의 근무경력과 금융위원회,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의 자문위원 경력을 갖고 있으며, 경영학 박사 취득자로서 금융 업무 부문의 높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증권, SK증권 등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당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노희진 후보자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근거 2024.03.2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후보자들은 당사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내규 등에서 정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검증하였고 후보자는 동 항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 후보자는 한국산업은행 출신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증권예탁결제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영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금융 및 경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2024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다년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책임감이 따르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대내외 평판이 우수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충실성

: 후보자는 2024년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후보자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당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관계가 없고, 또한 금융, 경영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 및 윤리성을 가지고 당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노희진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2024.3.2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데, 노희진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
다.

3-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봉철)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봉철

(2) 출생연도 : 1958년

(3) 출신학교 : 부산대 경영학과 학사

(4) 경력

2021.01 호텔롯데 고문

2020.01 호텔롯데 각자대표이사 겸임

2020.01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사장

2020.01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2017.01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2015.03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

(5) 사외이사 경력

-재임기간 : 2024.03.21. ~ 현재

-재임기간 중 출석률(2024.03.21. ~ 2024.12.31.)

: 이사회 총 12회 중 9회 참석(참석률 75%)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7회 중 6회 참석(참석률 86%)

: 보수위원회 총 6회 중 5회 참석(참석률 83%)

: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6회 참석(참석률 67%)

나) 후보 제안자

이봉철 후보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봉철 후보자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호텔롯데 각자대표이사 등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경영학 전공자로서 경영, 재무 업무 부문의 높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근무하며 그룹사 전반의 현안을 밝게 파악하고 있으며, 유기적인 소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봉철 후보자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근거 2024.03.2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후보자들은 당사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 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법 령, 내규 등에서 정한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검 증하였고 후보자는 동 항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 후보자는 경영학 전공자로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 롯데지주 재무 혁신실장 부사장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사의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이력도 있는 만큼 경영 및 재무 분야의 다양한 경험에 기초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2024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지주사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는 등 책임감이 따르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대내외 평판이 우수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충실성

: 후보자는 2024년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만큼, 향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후보자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당사와 이해상충 우

려가 있는 거래관계가 없고, 또한 경영, 재무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 및 윤리성을 가지고 당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이봉철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2024.3.2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데, 이봉철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장우

(2) 출생연도 : 1960년

(3) 출신학교 : 서울대 영어교육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박사

(4) 경력

2022.05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발전위원장

2020.07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

2018.06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

2018.12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2015.01 한국금융공학회장

2011.01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 후보 제안자

이장우 후보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장우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발전위원장, 한국금융공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 재무, 경영의 높은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그 간의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을 능률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장우 후보자는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근거 2024.03.2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후보자는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내규 등에서 정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검증하였고 후보자는 동 항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당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관계가 없고, 또한 금융, 경영, 재무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 및 윤리성을 가지고 당사의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이장우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4.3.2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데, 이장우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

5)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제28기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이중 연임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이장규	22.03.24~24.03.21	X	100%	-
이재술	22.03.24~24.03.21	X	67%	-

※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2024년 기준임

2023년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4년 3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이사회	일자	결의안건	보고안건
1차	2024.01.31	2건	13건
2차	2024.02.28	2건	3건
3차	2024.03.21	13건	1건
4차	2024.03.21	4건	-
5차	2024.04.24	2건	9건
6차	2024.05.29	4건	2건
7차	2024.06.26	2건	1건
8차	2024.07.23	1건	8건
9차	2024.08.28	1건	3건
10차	2024.09.24	1건	1건
11차	2024.10.23	3건	5건
12차	2024.11.27	1건	1건
13차	2024.12.17	4건	2건
14차	2024.12.27	6건	1건
15차	2024.12.27	4건	-

주) 상세 안건내용은 2.이사회-활동내역-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	일자	결의안건	보고안건
1차	2024.03.21	2건	-
2차	2024.03.21	1건	-
3차	2024.12.27	1건	-

주) 상세 안건내용은 3.임원후보추천위원회-활동내역 및 평가-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위원회

위원회	일자	결의·심의 안건	보고안건
1차	2024.03.21	1건	-
2차	2024.03.27	2건	-
3차	2024.04.24	1건	2건
4차	2024.05.29	1건	-
5차	2024.07.23	1건	1건
6차	2024.10.23	1건	2건
7차	2024.12.17	2건	-
8차	2024.12.27	1건	-
9차	2024.12.27	2건	1건

주) 상세 안건내용은 6.감사위원회-활동내역 및 평가-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	일자	결의·심의 안건	보고안건
1차	2024.01.31	1건	1건
2차	2024.03.21	1건	-
3차	2024.04.24	4건	1건
4차	2024.07.23	-	1건
5차	2024.09.24	1건	-
6차	2024.11.27	-	1건
7차	2024.12.17	2건	-

주) 상세 안건내용은 7.리스크관리위원회-활동내역 및 평가-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수위원회

위원회	일자	결의안건	보고안건
1차	2024.03.21	1건	-
2차	2024.04.24	4건	-
3차	2024.05.29	2건	-
4차	2024.07.23	1건	-
5차	2024.08.28	1건	-
6차	2024.11.27	1건	-

주) 상세 안건내용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상 1.보수위원회-활동내역 및 평가-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회	일자	결의안건	보고안건
1차	2024.12.27	4건	1건

주) 상세 안건내용은 8.내부통제위원회-활동내역 및 평가-회의 개최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이장규

사외이사 이장규는 2024년 3월 퇴임시까지 개최된 이사회 총 3회 중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1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이재술

사외이사 이재술은 2024년 3월 퇴임시까지 개최된 이사회 총 3회 중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1회 중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회 중 0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박홍신

사외이사 박홍신은 2024년 개최된 이사회 총 15회 중 15회, 보수위원회 총 6회 중 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3회 중 3회, 내부통제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7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이장우

사외이사 이장우는 2024년 개최된 이사회 총 15회 중 15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7회 중 7회,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9회, 내부통제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9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조점호

사외이사 조점호는 2024년 개최된 이사회 총 15회 중 1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3회 중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4회, 내부통제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6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노희진

사외이사 노희진은 2024년 3월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총 12회 중 12회, 보수위원회 총 6회 중 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회 중 2회,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8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이봉철

사외이사 이봉철은 2024년 3월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총 12회 중 9회, 보수위원회 총 6회 중 5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5회,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6회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7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사 외 이 사 명																			
이 장 규	3	3	17	-	-	-	1	1	1	-	-	-	-	-	-	-	-	-	12
이 재 술	3	2	4	-	-	-	1	1	1	-	-	-	1	0	0	-	-	-	9
박 홍 신	15	15	50	-	-	-	-	-	-	6	6	10	3	3	4	1	1	4	75
이 장 우	15	15	50	9	9	10	7	7	8	-	-	-	-	-	-	1	1	4	96
조 점 호	15	13	45	-	-	-	6	4	4	-	-	-	3	3	4	1	1	4	63
노 희 진	12	12	33	9	9	10	-	-	-	6	6	10	2	2	2	-	-	-	87
이 봉 철	12	9	21	9	6	6	6	5	4	6	5	6	-	-	-	-	-	-	75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그룹 차원에서 일괄 부보하고 있으며,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입니다. 방어비용이란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조사, 합의 또는 소송 시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배상책임 발생 시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기간 중 재직한 임원(2024년 12월말 기준 36명)이며, 보상한도액은 150억원입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성명	이장우	조점호	박흥신	노희진	이봉철	이장규	이재술
1 교육 연수실시내역							
가. 교육 연수일시및내용	■ 일시: 2024 4 29. ~ 5. 10. ■ 내용: [갯스마트] 자금세탁방지 교육(上)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 연수일시및내용	■ 일시: 2024 4 29. ~ 5. 10. ■ 내용: [갯스마트]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4. 5. 2 ~ 5. 10 ■ 내용: [BNK금융그룹] 윤리경영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4. 7. 29 ~ 8. 28 ■ 내용: [BNK금융그룹] 성희롱 예방교육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마.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4. 9. 24 ■ 내용: BNK투자증권 사외이사 내부통제 세미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바.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4. 11. 4 ~ 11. 15 ■ 내용: [갯스마트] 자금세탁방지 교육(下)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155	155	155	155	155	-	-

주1) 이장규/이재술 사외이사는 24년 3월 퇴임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내역 없음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박흥신

가)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함 (2024년 12월 기준)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박흥신 사외이사는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 대통령 비서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 감사, 한화생명보험 상임 고문 등의 행정, 공공, 금융 부문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박흥신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이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이후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박흥신 사외이사는 위법행위 등 신원조회 확인 결과에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박흥신 사외이사는 2024년 개최된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 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만큼, 향후에도 회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행정, 공공 부문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이장우

가)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함 (2024년 12월 기준)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이장우 사외이사는 부산대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로,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발전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위원,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 한국금융공학회장 등의 경영, 재무, 금융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이장우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이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이후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이장우 사외이사는 위법행위 등 신원조회 확인 결과에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이장우 사외이사는 2024년 개최된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 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만큼, 향후에도 회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경영, 재무 부문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조점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함 (2024년 12월 기준)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조점호 사외이사는 응용통계학 경제석사 출신으로, 대우증권/우리증권 애널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 본부장 등의 경제, 금융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조점호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이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이후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조점호 사외이사는 위법행위 등 신원조회 확인 결과에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조점호 사외이사는 2024년 개최된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만큼, 향후에도 회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부문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	--------------------------------

4) 사외이사 노회진

가)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함 (2024년 12월 기준)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노회진 사외이사는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산업은행, SK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코스콤 상임감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대우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등의 금융, 경영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노회진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이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이후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노회진 사외이사는 위법행위 등 신원조회 확인 결과에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노회진 사외이사는 2024년 개최된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만큼, 향후에도 회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금융, 경영 부문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5) 사외이사 이봉철

가)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함 (2024년 12월 기준)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이봉철 사외이사는 호텔롯데 각자대표이사,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 등의 경영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이봉철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이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이 후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이봉철 사외이사는 위법행위 등 신원조회 확인 결과에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이봉철 사외이사는 2024년 개최된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만큼, 향후에도 회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경영 부문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 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이장규	-	-	-	해당사항 없음	

이재술	-	-	-	해당사항 없음
박흥신	-	-	-	해당사항 없음
이장우	-	-	-	해당사항 없음
조점호	-	-	-	해당사항 없음
노희진	-	-	-	해당사항 없음
이봉철	-	-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이내이며, 연임 시 1년 이내로 제한하
 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참
 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 년초 이사회 및 사외
 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이사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이사회
 내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에 의한 수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5%), 상호평가(45%), 직원평가(20%)로 구분되어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참석률(10%), 평가결과(10%), 참석시간(10%)을 반영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통해 최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2025년 1월 평가절차에 따라 2024년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준수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제시 등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박홍신	탁월	탁월	탁월	탁월	-	-
이장우	탁월	탁월	탁월	탁월	-	-
조점호	탁월	탁월	탁월	탁월	-	-

노희진	탁월	탁월	탁월	탁월	-	-
이봉철	탁월	탁월	탁월	탁월	-	-

3) 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과 보완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부득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제4차 이사회에서 박흥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2024년 중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경영기획부 기획팀(8명)이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및 발송,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에서는 2024년도에 개최된 모든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사전 안전자료 통보 및 의안 통보, 소집통지 등을 수행하였고, 이사회 자료 및 의사록 작성, 사외이사와의 연락망 유지, 기타 비정기적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이장규

가) 재직기간 : 2022.03.24. ~ 2024.03.21. (24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150만원	
	기본금	1,000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15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5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376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50만원	-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226만원	명절/퇴임선물 등

2) 사외이사 이재술

가) 재직기간 : 2022.03.24. ~ 2024.03.21. (24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090만원	
	기본급	1,000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9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3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226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226만원 명절/퇴임선물 등

3) 사외이사 박홍신

가) 재직기간 : 2023.03.16.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420만원	
	기본급	4,000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42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14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56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6만원	명절선물 등

4) 사외이사 이장우

가) 재직기간 : 2023.03.16.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450만원	
	기본급	4,000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45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15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356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6만원	명절선물 등

5) 사외이사 조점호

가) 재직기간 : 2023.03.16.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60만원	
	기본급	4,000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36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12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356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6만원	명절선물 등

6) 사외이사 노회진

가) 재직기간 : 2024.03.21.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448만원	
	기본급	3,118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33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11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33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30만원	명절선물 등

7) 사외이사 이봉철

가) 재직기간 : 2024.03.21.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418만원	
	기본금	3,118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300만원	이사회 회의참가수당 30만원X10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3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30만원	명절선물 등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	-----------	-----------	----------	-----------	----	----

옥치장	2019.03.22	2023.03.16	48개월	임추위('19.4월~'23.3월) 리스크위('19.4월~'21.3월)	이사회위원장('20.5월~'23.3월) 임추위원장('19.4월~'23.3월)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동사상근교문
김세형	2019.03.22	2023.03.16	48개월	리스크위('19.4월~'23.3월)	리스크위원장('19.4월~'23.3월)	·매입경제고문 ·매입경제 전문이사
문혁주	2019.03.22	2022.03.24	36개월	임추위('19.4월~'22.3월) 리스크위('21.3월~'22.3월)	-	KNN 대표이사 동사장원본부장
허범도	2021.03.24	2022.03.24	12개월	리스크위('21.3월~'22.3월)	-	부산시 정무부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노치용	2021.03.24	2023.03.16	24개월	임추위('21.3월~'23.3월) 리스크위('22.3월~'23.3월)	-	카카오스마트감사 KB투자증권사 대표이사
이장규	2022.03.24	2024.03.21	24개월	임추위('22.3월~'23.3월) 리스크위('23.4월~'24.3월)	이사회위원장('23.3월~'24.3월)	중앙일보편집국장 하이트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이재술	2022.03.24	2024.03.21	24개월	임추위('23.4월~'24.3월) 리스크위('22.3월~'24.3월)	리스크위원장('23.4월~'24.3월)	·보령제약감사 ·달빛아트인진 대표이사
박홍신	2023.03.16	'25.3월 정기주총	21개월	임추위('23.4월~현재) 보수위('24.3월~현재) 내통위('24.12월~현재)	이사회위원장('24.3월~현재) 내통위원장('24.12월~현재)	·경향신문 부국장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
이장우	2023.03.16	'25.3월 정기주총	21개월	리스크위('23.4월~현재) 감사위('24.3월~현재) 내통위('24.12월~현재)	리스크위원장('24.3월~현재)	금융위 발전위원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조점호	2023.03.16	'25.3월 정기주총	21개월	임추위('23.4월~현재) 리스크위('24.3월~현재) 내통위('24.12월~현재)	임추위원장('23.4월~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동사 기획조정실장
노희진	2024.03.21	'26.3월 정기주총	9개월	임추위('24.3월~현재) 보수위('24.3월~현재) 감사위('24.3월~현재)	감사위원장('24.3월~현재)	·코스콤 상임감사 SK증권사 대표이사
이봉철	2024.03.21	'26.3월 정기주총	9개월	리스크위('24.3월~현재) 보수위('24.3월~현재) 감사위('24.3월~현재)	보수위원장('24.3월~현재)	·롯데그룹 호텔& 서비스 대표이사 ·호텔롯데 각자 대표이사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2023년 11월 제14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 결정시기, 후보자 추천 절차, 비상승계계획 수립 등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령(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를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개시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회사CEO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가 정하고, 회사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 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주회사 자추위에서 정하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추위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2. 자추위는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다.
3. 자추위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탐색 시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추위에서 관리하며, 후보군은 원칙적으로 지주 사내이사(회장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전무 이상), 투자증권 사내이사(부사장 이상, 상임감사위원 제외), 투자증권 자회사 업무집행책임자(부사장 이상), 계열사 CEO, 계열사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부행장보·부사장 이상, 상임감사위원 제외), 그룹 임원(퇴직자 포함) 중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외부 후보군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외부 후보군은 지원의사가 있는 후보자에 한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최고경영자 최종후보자 추천은 최고경영자 후보군에서 CEO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 다년간 후보자 경영 성과, 기본적인 자질(리더십, 전문성, 세평, 대외 인지도 등) 등을 감안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며,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로 확정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게 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영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자 선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주회사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와 같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임시 CEO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가 경영승계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과 필요한 경우 추가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최종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의 추천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

최종 후보자 확정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당사 신명호 대표이사는 2023.12.28. 대표이사 선임 당시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4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등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상기 외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 당사 신명호 대표이사는 2023.12.28. 대표이사 선임 당시 최고경영자에게 요구

되는 가치관, 비전, 경험, 전문성, 공익성, 건전성, 인품 등 당사가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추천 및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 당사 신명호 대표이사는 2023.12.28.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2024.1.1.자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2024년은 최고경영자 승계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 당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 개선내용을 2024년 8월 제9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지주회사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승계 체계 구축을 통한 자회사 CEO 경영승계 관련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지주회사에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당사는 이에 맞추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

지주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실무지원은 경영기획부 기획팀이 담당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대상자에 정기적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필요시 비정기적 자격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23명	100%	
외부	금융회사	-	-	
	비금융회사	-	-	
	공공기관	-	-	
	기타	-	-	
합계		23명	100%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과 그 적정성 점검은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와 관련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0조에

의거 경영기획부 기획팀이 담당합니다. 경영기획부 기획팀은 해당 업무 이외에도 이사회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경영기획부 기획팀

☞ 직원수 : 총 8명

☞ 담당자 : 총괄 - 경영기획부장 장대현 (02-2115-5122)

담당 - 매니저 권용석(02-3215-7547), 파트너 하도욱(02-3215-7525)

☞ 2024년도 운영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개선하기 위해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의·심의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성 제고 및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집행·결과평가·사후조치 및 개선방안의 제시,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외부감사인의 선정·해임 및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기타 감독당국의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법령, 정관 및 내규 등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4년 개최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2회의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상법 등 법규와 정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어 그 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일상감사를 통하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동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업무에 대해 총 362회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4년 3월 21일에 신설됨에 따라 현재 외부감사인은 ‘23년도 제1차 감사인선임위원회’(2023.2.3.)를 개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제5차 감사위원회(2024.7.23.)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등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감사담당임원이 상임감사위원 역할을 수행 중이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담당임원에게 다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습니다.

1.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감사보조조직의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감사담당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을 보고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감사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실사·입회·조회 그 밖에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감사결과가 적정하였음을 2024년도 3월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25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인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년 말 기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노희진 사외이사가 현재 위원장을 재임 중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재무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24.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노희진	사외이사	위원장	`24.3.21.	26년 3월 정기주총
이봉철	사외이사	위원	`24.3.21.	26년 3월 정기주총
이장우	사외이사	위원	`24.3.21.	25년 3월 정기주총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9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등의 안건이 부의되었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전원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4.3.21.(11:50)

[안건 통지일 : 2024.3.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4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4.3.27.(14:00)

[안건 통지일 : 2024.3.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결의) '22, 23년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4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4.4.24.(10:20)

[안건 통지일 : 2024.4.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4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4년 1분기 중요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심의) 내부통제기준 개정	적정	-	적정	적정

라) 제2024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4.5.29.(10:50)

[안건 통지일 : 2024.5.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심의) 내부통제기준 개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마) 제2024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4.7.23.(10:50)

[안건 통지일 : 2024.7.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4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24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4.10.23.(10:00)

[안건 통지일 : 2024.10.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4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4년 3분기 중요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24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4.12.17.(10:00)

[안건 통지일 : 2024.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감사계획의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1호안건(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아) 제2024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4.12.27.(10:10)

[안건 통지일 : 2024.1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	찬성	가결

자) 제2024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4.12.27.(11:20)

[안건 통지일 : 2024.1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노희진	이봉철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				
가. 지주 트레이딩 부문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 1호안건(결의)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	찬성	-	찬성	가결
나. 2호안건(결의) 감사보조조직의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 의	찬성	-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 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안전의 적정성, 위원회의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 발전 기여도, 감사위원회 참석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개별평가위원(이사) 및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직원에게 평가표를 제공한 후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 받은 후 위원회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인 감사부를 위원회 소속 하에 두고 있으며 감사담당임원은 이를 통할하여 회사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부 조직체계는 2024년 12월말 기준 총 6명으로, 부서장 1명과 부서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조기구인 감사부가 수행한 업무 결과를 감사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임원은 주요사항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성향 및 각종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견제하고 균형 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실시, 정기적인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및 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10조 ①항 2호에 의거 2002년 12월 1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통제 가능한 위험수준에서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과 목표 규제비율 및 각종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제반 업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 유지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는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3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2024년 리스크관리 정책방향 등 수립”을 결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지원’, ‘효율적 자본활용을 위한 리스크정책 수립 및 이행’을 정책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리스크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영업중심의 비즈니스 유도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
- ② 부동산PF 자산 건전성 관리
- ③ 영업확대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전문성 확보
- ④ 그룹 RWA, 유동성 규제 등에 따른 자본활용방안 마련

또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주회사로의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고이사결정기구의 결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자기자본의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인 리스크성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회사의 연간 업무계획 및 금융환경 전망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성향을 설정하고, 동 성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자본한도를 그룹과 협의하여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3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성향(Risk Appetite) 59%에 따른 내부자본한도를 7,025억원으로 설정하고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전략/평판 등) 내부자본 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 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리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지주회사 협의를 통해 총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리스크 유형별 한도산출 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및 위기상황추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증권업 규제비율 기준에 맞춰 전사차원의 NCR비율,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규제비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전사차원의 총위험액 한도, 채무보증 및 고위험자산투자(PI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부문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트레이딩업무를 대상으로 전사 손실한도(연간기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보고 함으로써, 유형별 리스크가 승인된 리스크허용한도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 활동내역 및 평가’의 ‘(2)회의 개최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 정의 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리스크관리의 실효성과 일

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침에는 리스크관리실무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 투자리스크관리지침, 자산운용리스크관리지침,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지침, 인수리스크관리지침, 적격기관투자리스크관리지침, 위기상황관리지침, 위험조정성과평가지침 등이 있습니다.

마) 기타

이 밖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등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운영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투자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로 위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의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이며,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성원

(2024.01.01.~2024.3.20.)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재술	사외	위원장	2023.04.26	2024.3월 정기주총까지
이장규	사외	위원		
이장우	사외	위원		

(2024.03.21.~2024.12월 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장우	사외	위원장	2024.03.21	2025.3월 정기주총까지
조점호	사외	위원		
이봉철	사외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결의안건은 8건, 보고안건은 4건, 심의안건 1건입니다.

8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매분기별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 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1.31.(수) 오전 10:00~10:30

[안건 통지일 : 2024.01.29.(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재술	이장규	이장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4분기 리스크 관리 현황 ¹⁾	특이의견 없음			완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규정 및 투자심의 위원회규정 개정(안) ²⁾	-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규제비율, 그룹/전사 한도,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현황 및 리스크협의체 결의사항, 리스크관리사업계획 이행사항, 위기상황분석결과 등 종합보고
- 2)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체 위원구성 변경

나) 제2024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3.21.(목) 오전 11:30~11:40

[안건 통지일 : 2024.03.19.(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우	조점호	이봉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 및 직무 대행순위 결정(안)	의결권 제한 ¹⁾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다) 제2024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4.24.(수) 오전 10:30~11:00

[안건 통지일 : 2024.04.22.(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우	조점호	이봉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1분기 리스크 관리 현황 ¹⁾	특이의견 없음			완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규정 및 리스크관리 규정 개정(안) ²⁾	찬성	찬성	-	가결
나. 운영리스크관리집행 위원회규정 제정(안) ³⁾	찬성	찬성	-	가결
다. 전사 리스크한도 변경 (안) ⁴⁾	찬성	찬성	-	가결

비고

- 1) 규제비율, 그룹/전사 한도,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현황 및 리스크협의체 결의사항, 위기상황분석결과 등 종합보고
- 2) 운영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신설 사항 반영
- 3) PSMOR(건전한 운영리스크관리원칙) 도입에 따른 규정 제정

4) 조직 신설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목적 전사 채무보증 및 고위험자산투자 한도 변경

라) 제2024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7.23.(화) 오후 14:40~15:00

[안건 통지일 : 2024.07.19.(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우	조점호	이봉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2분기 리스크 관리 현황 ¹⁾	특이의견 없음			완료
4. 의결안건	결의안건 없음			

비고

1) 규제비율, 그룹/전사 한도,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현황 및 리스크협의체 결의사항, 리스크관리사업계획 이행사항, 위기상황분석결과 등 종합보고

마) 제2024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9.24.(화) 오후 14:00~14:20

[안건 통지일 : 2024.09.20.(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우	조점호	이봉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투자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¹⁾	찬성	-	찬성	가결

비고

1) 리스크심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및 의결권 강화

바) 제2024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11.27.(수) 오전 10:40~11:00

[안건 통지일 : 2024.11.25.(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우	조점호	이봉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3분기 리스크 관리 현황 ¹⁾	특이의견 없음			완료
4. 의결안건	결의안건 없음			

비고

1) 규제비율, 그룹/전사 한도,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현황 및 리스크협의체 결의사항, 위기상황분석결과 등 종합보고

사) 제2024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12.17.(화) 오전 10:20~10:40

[안건 통지일 : 2024.12.13.(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우	조점호	이봉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5년 전사 리스크 한도 설정(안) ¹⁾	찬성	-	찬성	가결
나. 2025년 리스크관리 정책방향 등 수립(안)	찬성	-	찬성	가결

비고

- 1) 2025년도 그룹 한도, 규제비율 및 회사 주요 관리한도 설정
- 2) 2025년 리스크관리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결의

3)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 항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의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 발전 기여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참석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개별평가위원(이사) 및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직원에게 평가표를 제공한 후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 받은 후 위원회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 내부통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의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리를 총괄합니다.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합니다.

당사의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등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임기개시)

2) 구체적 역할

(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에서 2025년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을 결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내부통제의 운영주체
- ② 내부통제 정책의 운영
- ③ 2025년 내부통제업무 6대 전략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6조제1항제3호 및 4호에 따라 지배구조법 등 상위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27일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배구조내부규범」

- 이사회내 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이사회 권한 및 책임 추가(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감독)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추가(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자격요건 추가
- 공시의무 추가

②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내부통제집행위원회 신설

나. 구성(내부통제위원회위원)

1) 총괄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당사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등 관리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임기개시)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흥신	사외	위원장	2024. 12. 27.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이장우	사외	위원	2024. 12. 27.	
조점호	사외	위원	2024. 12. 27.	
김필상	상임	위원	2024. 12. 27. (임기개시일은 2025. 1.1.)	2026. 12. 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내부통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으며, 부의안건은 총 5건으로 결의안건은 4건, 보고안건은 1건입니다. 4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2024년도 내부통제업무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 1차 내부통제위원회 : 2024. 12. 27(금) 11:30~12:00

[안건 통지일 : 2024. 12. 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흥신	이장우	조점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도 내부통제업무	특이의견 없음			접수

결과보고				
4. 결의안건				
가.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5년도 내부통제업무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 2024년도 내부통제업무 결과보고(준법감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준법감시인 법률검토 및 사전검토 결과,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교육 실시 결과 등)

[결의안건]

가.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장 부재 또는 유고 시 직무대행 순위에 관한 사항을 결의

나. 2025년도 내부통제업무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안): 2025년도 내부통제업무의 기본방침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결의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 지배구조법 및 정관 개정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개정함을 결의(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라.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지배구조법의 개정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개정함을 결의(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3) 평가

당사는 내부통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

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 항목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의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 발전 기여도, 내부통제위원회 참석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개별평가위원(이사) 및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직원에게 평가표를 제공한 후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 받은 후 위원회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서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정책이 건전하고 적정하게 설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성과보수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수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202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보수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하여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서 위원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수체계에 대한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이봉철, 박흥신, 노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중 이봉철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이봉철 사외이사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롯데그룹 정책본부지원실장, 롯데쇼핑 지원담당 부사장,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재무혁신팀장,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으로서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말 기준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 리스크관리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이봉철	위원장	여/여	여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롯데그룹 정책본부지원실장(전무) 롯데쇼핑 지원담당 부사장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재무혁신팀장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롯데그룹 호텔&서비스 BU장 사장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박흥신	위원	여/부	부	경향신문 부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 한화생명 고문
노희진	위원	여/부	부	산업증권 국제업무실장 및 뉴욕사무장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 코스콤 상임감사 대우증권 사외이사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SK증권 사외이사

2) 구성원

- 2024년 말 기준 (2024년 중 구성원 변동 없음)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봉철	사외	위원장	2024.3.21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
박홍신	사외	위원	2023.3.16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노희진	사외	위원	2024.3.21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

주)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일자 및 임기만료일자 기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에서는 2024.4.24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상운영규정 제정’, ‘이연지급대상자 선정’, ‘본사영업부문 성과보상 제도(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4.5.29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2024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과 ‘2024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보수위원회규정'에서는 '보수지급에 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2.26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2024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량적 평가지표인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 산출 시 목표 위험가중자산(RWA)초과 자본비용의 조정계수를 6.72%에서 8.19%로 상향조정함으로써 RWA초과사용에 따른 자본비용 산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평

가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처리 기준 및 내규의 적정성, 공시서류 등의 적정성, 내부통제 관련 기준 준수 적정성 뿐만 아니라 부문별 고위험 업무를 준법감시부와 협의하여 2개 이상 정의하고 평가함으로써 사고 예방 노력을 정량화 하였습니다.

장기성과 평가기준의 경우 당사가 2023년말 자산 5조원이 초과됨에 따라 지배구조법에 의거하여 40% 이상 성과급 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대상 경영진에 대하여 최대 56%까지 성과급 이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5)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을 통해 보수정책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및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에는 위와 같은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는 2024.4.24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 및 2024.5.29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체계가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변동보상의 지급형

태 및 방식, 현금보상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 관련법규 전반에 대해 내규 및 운영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수체계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성과급제 제정 및 성과급 지급 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보수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은 전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전사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의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적용 받는 경영진 및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4.24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상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전 임원과 증권 등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직원 중 보수위원회 의결한 자를 이연지급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차 보수위원회에서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을 상세하게 결정한 바, 2024년 12월 말 기준 최종 적용대상은 임원 28명,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97명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 수	직명
임원	29명	상근등기임원, 업무집행책임자 등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97명	IB 및 운용부문 관련 인력 등

*당해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 이봉철 사외이사)가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의 경우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는 데, 2024년도 보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위원들의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4년도에는 총 6회차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결의안건 10건이 부의되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의 요청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이를 반영

함으로써 보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회의 개최 내역

가) '24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4.3.21(11:40)

[안건통지일 : 2024.3.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철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①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4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4.4.24(10:00)

[안건통지일 : 2024.4.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철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① 성과보상운영규정 제정	-	찬성	찬성	가결
② 이연지급대상자 선정	-	찬성	찬성	가결
③ 본사영업부문 성과보상제도 운영(안)	-	찬성	찬성	가결
④ 2024년 1분기 본사영업부문 영업성 과급 지급	-	찬성	찬성	가결

다) '24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4.5.29(10:30)

[안건통지일 : 2024.5.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철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① 2024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기준 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립 및 계약체결				
② 2024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4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 2024.7.23(14:00)

[안건통지일 : 2024.7.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철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① 본사영업부문 성과보상제도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4년도 제5차 보수위원회 : 2024.8.28(10:40)

[안건통지일 : 2024.8.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철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① 2024년 2분기 본사영업부문 성과보상 지급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4년도 제6차 보수위원회 : 2024.11.27(10:20)

[안건통지일 : 2024.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철	박홍신	노희진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① 2024년 3분기 본사영업부문 성과보상 지급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매년 초 보수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 발전 기여도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보수위원회 위원들과 보수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의 서면평가를 통해 수행되고 있고 이 모든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지원 업무는 보수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성과측정의 주요 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영업수익, 세전이익)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문의 사업목표 달성률, 외형성장도 및 주요 핵심과제 달성률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적 재무성과(ROA, ROE, CIR, RORWA, NCR, CIR 등) 및 주주수익률(상대적 TSR)을 공통으로 반영하되, 담당업무별로 가중치를 상이하게 설정하여 개별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으며, 비재무지표인 개인역량평가, 내부통제평가 등은 경영진의 담당업무를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본부 업무집행책임자, 위험관리 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발생이 없도록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및 개인의 성과측정 결과와 보수의 연계방법

당사 성과급은 영업성과급과 지원부문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업성과급은 각 조직별 업무 특성에 맞는 수익과 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실질적 성과가 측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부문 성과급은 비영업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사업실적에 연동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별도로 결정 후 지급합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해당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액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변동 보상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이연보상액에서 차감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이연보수액 중 지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하여 매년 지급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며 그 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미확정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기본연봉과 그 외 보상 중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된 보상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영업성과 및 경영진성과평가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은 성과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현금보상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은 성과보상운영규정 및 경영진성

과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경영진의 성과보수액 중 상당부분을 추가연계현금보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액 중 46% 상당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54% 상당은 3년간 균등배분하여 추가연계현금보상 방식으로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주식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성과보수액 중 주식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사의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및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에는 각 조직별 성과급제도에 따라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비율이 결정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전체 규모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직원의 직급별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본연봉과 회사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 재원에서 개인별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으로 보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별도 요청이 없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내역은 없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내역

당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사항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5.29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의 및 결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평가항목 중 당기순이익 비중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그룹시너지 KPI 및 자금관련 거래항목 결과에 대한 5%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RWA초과예산 사용에 따른 자본비용 산출 기준 강화를 통해 RWA 예산 내 자산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RWA 초과 자본비용 조정계수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당해년도 (2024년)	520.1	289.6	1.8	402명	1.3

주1) 임직원 보수총액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지급 기준 금액임.

주2) 임직원 수는 해당년도 말의 재직자 기준임.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지급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사외	집행	1~3급	4~7급	기타
당해년도 (2024년)	보수총액	9.2	2.2	99.7	279.5	122.3	7.2
	성과보수액	4.4	0.0	48.6	101.5	22.7	0.0

주1) 해당년도 지급 기준 금액임.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당해년도 (2024년)	임원	28	48.3	74.8	36.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97	88.8	117.9	52.6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

주2) 퇴직연금납입(예정)분 제외, 주식보상의 경우 2024년 말 종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회계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성과 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24년)	임원	74.8	66.8	8.0	0.0	0.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117.9	117.9	0.0	0.0	0.0

주1)주식: 최대지급가능수량에 53.14%(22년~23년 평가결과의 평균)를 곱하여 주식수량 산출 후, 2024년 말 종가 10,340원을 적용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주2)}	지급미확정 ^{주3)}	
당해년도 (2024년)	임원	39.6	30.0	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52.6	52.6	0.0

주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 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으로 퇴직연금납입(예정)분 제외

주2) 지급확정: 주식보상의 경우 지급확정수량에 2024년 말 종가 10,340원을 적용

주3) 지급미확정: 각 년도별 최대지급가능수량에 53.14%(22년~23년 평가결과의 평균)를 곱하여 주식수량 산출 후, 24년 말 종가 10,340원을 적용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24년)	임원	39.6	28.4	11.2	0.0	0.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52.6	52.6	0.0	0.0	0.0

주1) 주식 : 2024년 말 종가 10,340원을 적용

5) 이연보수액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당해년도 (2024년)	임원	39.6	36.4	1.7	0.8	0.7	0.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52.6	52.6	0.0	0.0	0.0	0.0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증가)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1)}
		직접적 조정	간접적 조정		
당해년도 (2024년)	임원	-	-	-	3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	-	-	52.6

주1) 영업성과의 변동, 주가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주1)}	1인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24년)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제외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24년)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24년)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없음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억원)

구분		수급자수	일회성 인센티브	1인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24년)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 -	0.87 -	0.87 -

주1) 일회성 인센티브 :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Sign-on awards)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이하 “회사”)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BNK Securities Co., Ltd. 라 칭한다.(2011. 6. 15. 개정)(2015. 3. 27. 개정)(2024. 12. 27. 개정)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 5. 31.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무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② 이 회사는 전항의 사업 이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2019. 5. 31. 개정)

제3조(본점의 소재지 등)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bnkf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게재한다.(2011. 3. 4. 개정)(2015. 3. 27. 개정)

제2장 주식

제5조(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2012. 6. 12. 개정)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하며, 주권의 종류는 1주권, 10주

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100,000주권의 6종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공모 증자를 위한 경우의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2024. 12. 27. 개정)

제10조(주식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에는 그 주권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11조(질권등록 등) ①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신청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12조(주권의 재교부) 주권의 재교부를 원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주권의 상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2. 주권을 오손한 때 또는 주권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권. 다만, 오손에 의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신고) ①주주 및 등록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②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주주 및 등록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에 거주소 또는 공정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 결산기의 익일부터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2011. 5. 3. 개정)

②임시 주주총회 또는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상당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5조(채권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9. 3. 22. 신설)

제15조의 2(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2019. 3. 22. 조 신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주주총회의 소집) ①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 2(주주총회의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소집 할 수 있다.

(2019. 3. 22. 조 신설)

제17조(소집권자 및 의장)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소집의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사항 및 그 요령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1조(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한다.

제22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회사에 비치한다.(2024. 12. 27. 개정)

제5장 이사 및 이사회(2024. 12. 27. 개정)

제23조(이사의 수) ①회사는 3인이상의 이사를 둔다.(2024. 3. 21. 개정)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16. 12. 30. 개정)(2024. 3. 21. 개정)

제2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4. 3. 21. 개정)

②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4. 12. 27. 신설)

③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2024. 3. 21. 단서 신설)

제25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2024. 3. 21. 개정)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2. 30. 개정)

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2016. 12. 30. 개정)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6. 12. 30. 개정)

⑤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이전에 만료한 때에는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016. 12. 30. 개정)

⑥(2024. 3. 21. 삭제)

제26조(이사의 보선) ①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3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2. 30. 개정)(2024. 3. 21. 개정)(2024. 12. 27. 개정)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2024. 12. 27. 개정)

제27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27조의2(위원회) ①이사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2024. 3. 21. 개정)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2024. 12. 27. 신설)

②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전항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2024. 3. 21. 개정)

(2016. 8. 1. 조 신설)

제27조의3(이사회의 권한)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24. 12. 27. 신설)
6.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전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4. 12. 27. 신설)

(2016. 8. 1. 조 신설)

제2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2005. 6. 1. 개정)(2007. 3. 23. 개정)(2011. 5. 3. 개정)(2016. 12. 30. 개정)(2024. 12. 27. 개정)

②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내이사에 대해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2011. 5. 3. 신설)(2016. 12. 30. 개정)

제29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2024. 12. 27. 개정)

②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 및 결의) ①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에 대하여 회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3. 21. 개정)

③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3. 2. 4. 개정)

④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4. 3. 21. 신설)

제31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회사에 비치한다. (2024. 3. 21. 개정)

제32조(감사위원회)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7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⑦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기타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24. 3. 21. 조 신설)

제33조(이사의 보수) ①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2007. 3. 23. 개정)(2021. 9. 28. 개정)

②이사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021. 9. 28. 신설)(2024. 12. 27. 개정)

제5장 계산

제34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 6. 12. 개정)(2024. 12. 27. 개정)

제35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말에 결산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고,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 6. 12. 개정)(2024. 12. 27.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영업보고서

②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2024. 12. 27. 신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전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 12. 27. 신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24. 12. 27. 신설)

⑤대표이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의 서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 6. 12. 신설)

제3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달리 처분할 수 있다. (2024. 12. 27. 개정)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36조의 2(중간배당) 회사는 연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022. 3. 24. 조 신설)

제37조(이익배당)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38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다.

(2024. 3. 21. 조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 5. 12. 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4. 3. 21.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 6.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11.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3.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5.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6.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6. 1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하되, 시행전까지는 변경전 기준인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2.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3.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12.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3. 2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4.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5.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9.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 3.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 3.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 12. 27. 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부칙에 적용례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배구조 내부규범(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BNK투자증권(이하 “회사” 라 한다)이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주회사등” 이란 BNK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자회사등” 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임원” 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 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 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 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 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8. “경영진” 이란 임원으로 본부를 담당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사회등” 이란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결의한 사람을 말한다.
11. “책무” 란 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2024. 12. 27. 신설)

12. “책무구조도”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로서,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를 포함하여 말한다. (2024. 12. 27. 신설)

②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등의 활동내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의 결의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2024. 12. 27. 개정)

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지주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제2항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 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④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024. 12. 27. 신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③ 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4. 12. 27. 신설)

⑤ 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회사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 이사회는 회사를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24. 12. 27. 신설)
7.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 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
5. 분기별 결산결과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 후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내이사(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매년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2024. 5. 29. 신설)

제13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④사외이사는 회사에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지주회사등에서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지주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정관」 제23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5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 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2024. 5. 29.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 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2024. 12. 27. 신설)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지주회사의 자회사CEO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자의 심사 및 추천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의결 및 집행기구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률 및 내규에서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보수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

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7. 「임원퇴직급여규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항
8.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024. 12. 27. 조 신설)

제27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①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은 제17조를 준용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 제28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 ②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2024. 12. 27. 개정)

- 제29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②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자가 같은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 제30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는 이사회 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 ②대표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회사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회사의 수익·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 의 지침 수행
- ③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부여 받은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 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31조(임원의 선임)** ①회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 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대표이사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 후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③사의이사,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④사내이사(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⑤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연임 및 승진 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선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임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⑦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퇴임) ①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3조(경영진의 임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경영진을 선임 또는 해임 할 경우
2. 경영진이 중도사임 할 경우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4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입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 임원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교육·연수·평가제도 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회사는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6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③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성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방법) ①성과보수는 보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지급 시 환수율을 산정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38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지주회사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의 경영승계 절차
6.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7. 최고경영자 유고시 비상승계계획
8. 그 밖에 최고경영자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회사는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업무를 지원할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 승계 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2.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40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회사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41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3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44조(정기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8. 내부통제위원회 활동 내역(2024. 12. 27. 신설)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

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연차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 및 공시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수시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선임 및 퇴임(사임 포함)(2024. 12. 27. 개정)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 변경(2024. 12. 27. 신설)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변경 또는 추가(2024. 12. 27. 신설)
4.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5.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②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제4호의 경우 제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4.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

제46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7조(내부통제기준)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제48조(위험관리기준) ①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49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지배구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4. 3.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4. 5.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4. 12. 27. 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부칙에 적용례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사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16. 10. 26. 개정)(2024. 3. 21.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024. 3. 21. 개정)

제3조의2(이사회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4. 12. 27. 조 신설)

제3조의3(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27. 조 신설)

제4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 5. 29. 신설)

(2024. 5. 29. 조 개정)

제5조(소집) ①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 의장에게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에 대하여 회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3. 21. 개정)

제6조(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3. 1. 29.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4. 3. 21. 신설)

③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2024. 3. 21. 개정)

제7조(심의·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

(2016. 10. 26. 개정)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 다.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 다. 「리스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위임)
 - 라. 「경영진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마.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2016. 12. 30. 신설)
 - 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사항(2021. 9. 28. 신설)
 - 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내부통제위원회로 위임)(2024. 3. 21. 신설)(2024. 12. 27. 개정)
 - 아.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내부통제위원회로 위임)(2024. 12. 27. 개정)
 - 자.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 차.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카.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관한 사항 (2024. 3. 21. 신설)
 - 타. 기타 내규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 사항
 - 파.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 하. 상기 각 호의 규정의 폐기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 규정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 나.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다만, 감사위원 제외) (2024. 12. 27. 단서 신설)
 - 라.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확정
 - 마.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 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2024. 3. 21. 신설)
 - 차.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2024. 3. 21. 신설)
 - 카. 책무구조도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24. 12. 27. 신설)
5.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4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차 (2020. 10. 28. 개정)
 - 나. 건당 2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산의 취득·처분·임대차(2020. 10. 28. 개정)

다. 건당 2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계약 및 협약 (2020. 10. 28. 개정)

라. 건당 소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포기·응소 (2020. 10. 28. 개정)

마. 자산재평가

6.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건당 50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차입. 다만, 다음의 차입은 제외한다.(2024. 12. 27. 신설)

1) 1년 이하의 단기차입

2) 국내·외 금융기관에서의 차입

라. 사채의 발행

7.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24. 12. 27. 신설)

8. 기타 사항

가.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 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나. 전 각 호외에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여야 할 사항

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라.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27. 단서 신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 결과(2024. 12. 27. 신설)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2024. 12. 27. 신설)

3.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2024. 12. 27. 신설)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2024. 12. 27. 개정)

5. 분기별 결산결과

6.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2024. 12. 27. 개정)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7조 각 항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절차에 따라야 한다.(2016. 10. 26. 개정)

제8조(의견청취) ①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 직원, 외부인사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6. 10. 26. 개정)

②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2016. 10. 26. 개정)

제9조(의사록) 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비치한다.(2024. 3. 21. 개정)(2024. 12. 27. 개정)

②경영기획담당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24. 12. 27. 개정)

제10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2024. 3. 21. 개정)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2024. 12. 27. 신설)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2024. 5. 29. 개정)

(2016. 12. 30. 조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7.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5.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4.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9. 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9. 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5.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3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30. 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10조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2.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4.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3.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9.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5.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2. 27. 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부칙에 적용례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회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4. 3. 21. 개정)

제6조(심의·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지주회사의 자회사CEO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자의 심사 및 추천 (2024. 3. 21. 신설)
(2024. 5. 29. 개정)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2024. 3. 21 신설)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경영기획부는 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부서로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경영기획부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③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4.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5. 29. 부터 시행한다.

보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을 수립하고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수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경영진”이란 임원으로 본부를 담당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리 운영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 7. 임원퇴직급여규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항
 - 8.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9.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에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가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3항을 준용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위원회는 관련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인사부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21. 부터 시행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소집) 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의 결정
3. 목표 규제비율 설정 및 변경
4.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 한도내 전사한도 설정 및 변경
5. 전사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6.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규정」, 「운영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규정」, 「투자심의위원회규정」 제정 및 개·폐 (2024. 6. 1. 개정)
7. 리스크관리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투자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규모를 초과하는 투자
9.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규(지주 규정 포함) 및 내규 등에서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6. 1.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1.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중 재무리스크가 수반되는 M&A,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3-라

- 1을 초과하는 출자 등
 - 2. 외규(지주 규정 포함) 및 내규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분기별 리스크관리현황
 - 가. 리스크관리환경 변화
 - 나. 위원회가 설정한 리스크한도관리현황
 - 다. 반기별 사업계획 이행사항
 - 라. 위기상황분석 결과(유동성위기상황 분석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포함)
 - 마.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운영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결의사항 등
(2024. 6. 1. 개정)
 - 2. 외규(지주 규정 포함) 및 내규 등에서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결의사항 등의 처리)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결의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결의 또는 심의 안건의 중요한 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부의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판단한 경미한 경우는 제외)
- ③ 조건부 가결 등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에 의해 조건 충족이 확인된 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 ② 간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스크관리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등) ①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 등에는 안건, 회의 결과 및 결의내용, 반대한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운영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또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024. 6. 1. 개정)

제1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7.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 6.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 4.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4.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1.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1.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준법감사·업무감사·경영감사·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의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조직의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의 선정, 해임에 대한 요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당국의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금고·창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5.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요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대표이사, 집행기관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고의무) ① 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구성 및 자격요건)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감사위원" 이라 한다)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 년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이 없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보조조직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제 16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③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임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종료후 1 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각 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 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은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감사 관련 업무, 재산의 조사
- 다. 감사보조조직의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해임에 대한 요청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 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마. (2025. 1. 1. 삭제)
-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아.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이나 자구 수정은 제외)

2. 기타사항

- 가. 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감사업무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임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감사보조조직의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2025. 1. 1. 삭제)

제 18 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상임감사위원은 제 16 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2025. 1. 1. 삭제)

제 5 장 보 칙

제 19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보수, 유지 및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 20 조(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③ 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④ 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21.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2. 27.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 10 조,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은 2025. 1. 1. 부터 적용한다.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되는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내부통제)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025. 2. 5. 신설)

제 2 장 구성

제 4 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 5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제 3조에서 정한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제 6 조(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소집 시기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일 7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서면(E-mail 등 전자통신 수단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업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증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위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가 각각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2 및 제 30 조의 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대한 점검,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관련된 사항
2.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에 대한 점검,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의사록) ①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심의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타사항

제 11 조(실무협의회)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을 지원하는 소관부서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제 6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의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 단순한 자구 수정 및 법규개정사항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2. 27.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내부통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2. 5. 시행한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와 지주회사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은 지주회사의 자추위에서 수립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주회사의 자추위 결의로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지주회사 자추위 및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 및 회사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주회사 자추위에서 정한다.

② (2024. 5. 29. 삭제)

③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지주회사 자추위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자추위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이 관련법령 및 이 규정 및 지주회사 자추위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 자추위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 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주회사 자추위에서 정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은 지주회사 자추위에서 관리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 자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다.
③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선임 결과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 사실 및 공시 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최고경영자 유고 시 비상승계계획)①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주회사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2024. 5. 29. 삭제)

제10조(지원부서) ① 기획담당 부서는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2.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 기획담당 부서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1.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5. 29. 부터 시행한다.

<별표>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 여부
000(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000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사외이사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 5조제 1항 및 같은 법 제 6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지주회사 및 계열사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제 3항 제 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 3 조(사외이사 선임) ①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4. 5. 29. 개정)

②후보자선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업무절차에 따른다

제 3 조의 2(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2024. 5. 29. 조 신설)

제 3 조의 3(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에 사외이사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서에 제7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4. 5. 29. 조 신설)

제 4 조(사외이사의 임기) 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이사회 에서 인정 되어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 3 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2(신임 사외이사 비율) 회사는 매년 1 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2024. 5. 29. 조 신설)

제 5 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사외이사의 책임) ①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제 1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지주회사 및 계열사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024. 5. 29. 신설)

⑥회사가 제 5 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을 최대 한도 1 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한다. (2024. 5. 29. 신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 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다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하 “비영

리법인등”이라 한다)이 당사(계열회사 및 당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당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 이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가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비영리법인등이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024. 5. 29. 신설)

제 7 조의 2(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2024. 5. 29. 조 신설)

제 7 조의 3(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2. 제 1 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 4 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 1 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2024. 5. 29. 조 신설)

제 8 조(사외이사의 보수) ①사외이사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을 따른다.

②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2024. 5. 29. 신설)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게 이사회등의 활동, 간담회 활동, 사외이사회의, 이사회 워크숍, 그룹 내·외부 연수 참여,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한 임직원 면담, 퇴임식 행사 등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편익(교통, 숙박, 식사, 차량 지원, 연수비, 체육활동비, 감사패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①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경영기획부로 한다.

②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 10 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사회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2024. 5. 29. 개정)

제 11 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2024. 5. 29. 조 신설)

제 13 조(공시) ①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 및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관계법령과 관계) ①이 규정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15 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에 게 위임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5. 29. 부터 시행한다.